

제1회 롯데 mom편한 가족상 시상 안내

롯데는 가족친화기업으로서 mom편한 브랜드를 통해 가족과 사회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롯데 mom편한 가족상」은 일상 속에서 따뜻한 변화를 실천하며 우리 사회를 이롭게 만드는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시상개요

가. 시상명 : 제1회 롯데 mom편한 가족상

나. 주최/주관 : (주)롯데지주 / (주)보건복지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다. 시상내용

부문	시상내용	
	개인	단체
출산·양육 부문	롯데지주 대표이사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가족나눔 부문		초록우산 회장상
가족다양성 부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상

라. 시상 규모 : 개인/단체 구분 없이 각 상금 2천만원(제세공과금 포함) 및 부상

마. 시상 부문 및 기준

- 출산·양육 부문 :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 및 양육 환경 개선에 기여한 사례
- 가족나눔 부문 : 가족이 함께 사회에 기여하거나,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활동을 실천한 사례
- 가족다양성 부문 :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립하고 편견을 극복한 사례

부문	기준	
	개인	단체
출산·양육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치료·장애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헌신적으로 양육한 사례 • 다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족 간의 화합 이끈 사례 • 조손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입양, 위탁가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양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단체 - 저소득·맞벌이 가정 프로그램 대상 돌봄, 교육, 정서 지원 운영 사례 - 양육 친화적인 인프라 구축 사례 등
가족나눔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단위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사례(봉사, 재능 기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돌봄·상담·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가족 친화 나눔 문화 확산 활동을 전개한 사례
가족다양성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형태·배경(한부모, 다문화 등)으로 인한 차별을 극복하고 인식 변화를 이끈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가족 지원 전문 단체 • 가족 다양성 인식 개선 활동 - 다양성 존중 캠페인 - 맞춤형 지원서비스 (장애가정 활동지원, 다문화 언어 교육 등 특정 가족형태에 최적화된 서비스 지원 사례)

2. 자격요건

가. 추천 대상

- 1) 공통
 - 국민 누구나 참여, 아동 복지 기관, 지자체 등 유관 기관 추천 가능
- 2) 개인
 - 다양성 부문의 경우, 행위의 주체가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지원 가능
(ex. 다문화 등에 대한 정보나눔 커뮤니티 운영사례)
 - ※ 추천서 받기 어려운 경우 운영사무국 문의
- 3) 단체
 - 영리법인 제외, 공적 기간 3년 이상 단체


나. 추천인

- 1) 전국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의 장
- 2) 대학의 장
- 3) 사회단체의 장(지회장 포함)
- 4) 의료기관 및 관련 협회의 장
- 5) 재단이 위촉한 인사

3. 접수 방법 및 제출서류

가. 접수 방법

- 1) 접수 기간 : 2026.02.05(목) ~ 2026.03.11(수)
 - 접수 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 ① 초록우산 홈페이지 ▶ 공지/뉴스 ▶ 공지사항 ▶ 'mom편한 가족상' 검색
 - ② 초록우산 홈페이지 URL : <https://buly.kr/9iHVHOF>
 - 신청서 제출 방법 : ① 제출 서류 모두 작성 후 하나의 파일로 병합 제출
(추천서 + 공적요약서 + 공적조서 등)
 - ② 제출 서식 작성 후 부문별 이메일 접수 진행

초록우산 홈페이지	부문별 이메일 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양육 부문 : familyaward.care@gmail.com - 가족나눔 부문 : familyaward.share@gmail.com - 가족다양성 부문 : familyaward.diverse@gmail.com

- 나. 제출서류 : ① 수상후보자 추천서 ②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 ③ 수상 동의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4. 심사 및 진행 일정

가. 심사

- 1) 예비심사 : 서류 누락 등 형식요건 검증
- 2) 1차 심사 : 운영사무국 실무단 심사
- 3) 2차 심사 : 심사위원회 심사(서면+대면)
- 4) 최종 심의 및 확정 : 후보자에 대한 증빙서류 확인 후 최종 확정(부문별 2팀 / 총 6팀 선정)

나. 진행 일정

- 1) 서류 심사 : 3~4월
- 2) 수상자 발표 : 4월 내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발표 예정

5. 시상식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6년 5월 3주차(예정)

나. 장소 : 롯데호텔서울(예정)

6. 기타

가. 수상 공적의 허위사실 및 위법행위 등으로 수상자로서 부적격한 행위가 밝혀진 경우 수상자 선정과 시상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추천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심사 및 수상대상 제외(붙임1. 추천 제한 확인)

다. 이메일 오접수 시 서류탈락으로 간주

라. 대면심사는 대상 후보자에게 별도 공지 예정

마. 최종 후보자에 한해 기준중위소득 확인을 위한 소득증빙서류 및 관련 서류 추가제출 요청 예정

7. 문의 안내

가. 문의 : 운영사무국(E-mail : familyaward.contact@gmail.com / TEL : 010-8766-9457)

붙임 1

추천 제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가.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나.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1)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2)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3)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 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 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가.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나. 음주운전, 성범죄, 학교폭력 등으로 처벌(분)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처벌(분) 종료, 추천제한 기간 경과한 경우에도 포상 제외

9.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가.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나.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10.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